

- 2026년 수락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I. (계약 및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본 센터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변경기록지
- 2) 입소(이용)자의 권리
-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4) 전염성 질환 및 공격적 행동 등에 따른 격리 및 신체구속동의서
- 5)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1.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한 해당서류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치매진단서 (해당자) 1부,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 1부

III. (계약기간)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센터와의 계약 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아래의 퇴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IV.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V. (계약의 정지) IV.(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4호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시설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VI.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 1. 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41,820	6,273
	2등급	38,720	5,808
	3등급	35,740	5,361
	4등급	34,120	5,118
	5등급	32,490	4,874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6시간 이상	1등급	56,060	8,409
	2등급	51,930	7,790
	3등급	47,940	7,191
	4등급	46,300	6,945
	5등급	44,650	6,698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8시간 이상	1등급	69,730	10,460
	2등급	64,590	9,689
	3등급	59,640	8,946
	4등급	58,010	8,702
	5등급	56,360	8,45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0시간 이상	1등급	76,820	11,523
	2등급	71,160	10,674
	3등급	65,750	9,863
	4등급	64,090	9,614
	5등급	62,460	9,369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6
	2등급	76,310	11,447
	3등급	70,500	10,575
	4등급	68,860	10,329
	5등급	67,240	10,086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의료급여)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학무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 부담하고 그 세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인 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

가. 식사재료비 : 4,000원(1식 기준)

나. 간식비 : 1,200원(1일 기준)

② 등급외자 이용료 : 56,360원(1일 기준)

가.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장기요양급여 5등급 수가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주말, 공휴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 5등급 기준에 따른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청구비용은 10만원 초과 시 이용금액의 70%로 제한한다.

7. 이용료는 매월 15일 전까지 후납하며, 이용료의 납부는 계좌이체로 한다.

Ⅶ. (이용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 등급 외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Ⅷ.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요구 권리.
- ② 표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요구 권리.
- ③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
- ④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가족행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 평가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⑤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